

의안번호	2205759
의 퇴 인	서왕진의원
회 답 일	2024. 12. 23.
추 계 번호	24D5259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시·도지사가 소방공무원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조치를 강구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64억 5,300만원, 2030년 70억 7,200만원 등 향후 5년간 총 336억 6,300만원(연평균 67억 3,300만원)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소방공무원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재정적 조치 (안 제8조제2항 신설)	6,453	6,534	6,755	6,849	7,072	33,663	6,733

주: 1. 소방공무원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재정적 조치(안 제8조제2항 신설)는 의무규정 재정수반 요인

2. 개정안의 제안이유를 고려하여 소방공무원 복지시설(소방관서 매점, 식당, 수련원 등) 중 식당에서 급식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재정적 조치를 강구하는 것으로 가정

3. 소방청에 따르면, 18개 지방소방본부의 급식비 지원 현황을 조사한 결과 지원을 하고 있는 12개 지방소방본부의 평균 예산은 1인당 23만원임. 이에 본 추계에서는 개정안에 따라 현재 급식비 지원이 평균액 이하인 9개 지방소방본부가 1인당 연간 23만원(2023년 기준, 추계기간 동안 소비자물가상승률에 따라 상승)의 급식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가재정소요 추계

4. 본 추계는 개정안에서 규정한 재정적 조치를 급식비 지원이 평균액 이하인 9개 지방소방본부에 급식비를 확보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한 결과로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8조제2항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집행계획의 수립·시행)	시·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연도별계획에 따른 복지시설 설치·운영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매년 소요비용에 대한 예산편성 등 필요한 재정적 조치를 강구하여 집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함	의무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8조제2항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집행계획의 수립·시행)	○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본 추계에서는 개정안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조치로 현재 급식비 지원이 평균액 이하인 8개 지방소방본부에 급식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가정
- 개정안의 제안이유를 고려하여 소방공무원 복지시설(소방관서 매점, 식당, 수련원 등) 중 식당에서 급식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재정적 조치를 강구하는 것으로 가정
 - 소방청에 따르면, 18개 지방소방본부의 급식비 지원 현황을 조사한 결과 지원을 하고 있는 12개 지방소방본부의 평균 예산은 1인당 23만원(2023년 기준)이고 평균액 이하인 지방소방본부는 9곳

[표 2] 소방본부별 급식비 지원 현황

(단위: 명, 만원)

연번	지방소방본부	정원	급식비지원 예산	연간 1인당 급식비
1	서울	7,434	3,797,579	51
2	부산	3,748	32,500	1
3	대구	2,980	467,040	16
4	인천	3,405	4,272,347	125
5	광주	1,618	-	-
6	대전	1,630	510,600	31
7	울산	1,399	-	-

연번	지방소방본부	정원	급식비지원 예산	연간 1인당 급식비
8	세종	585	—	—
9	경기	11,495	—	—
10	강원	4,463	—	—
11	충북	2,845	655,440	23
12	충남	4,266	813,408	19
13	전북	3,456	789,360	23
14	전남	4,516	1,731,991	38
15	경북	5,489	2,228,100	41
16	경남	4,373	1,072,000	25
17	제주	1,229	297,600	24
18	창원	1,128	—	—
합계		66,059	평균	23

자료: 소방청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소비자물가상승률¹⁾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 적용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한 부칙을 고려하여 추계 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현재 급식비 지원이 평균액 이하인 9개 지방소방본부에 급식비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비용
- 본 추계에서는 9개 지방소방본부별 소방공무원 수에 1인당 지원비용을 곱하여 산출
 - (소방공무원 수) 2026년 31,872명, 2030년 32,129명으로 추정
 - 2023년 기준 1인당 급식비 지원액이 평균액 23만원 보다 작은 지방소방본부는 부산, 대구, 광주,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남, 강원으로 총 9곳

1) 국회예산정책처 전망(2024.10.)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
소비자물가상승률	3.6%	2.5%	2.2%	2.0%	2.0%	2.0%	2.0%

- 2023년 기준 각 본부별 정원에 추계기간 동안 0.2%²⁾ 증가율을 적용하여 소방공무원 수 추정

[표 3] 소방본부별 소방공무원 수 추정: 2026~2030년

(단위: 명)

연번	지방소방본부	2026	2027	2028	2029	2030
1	부산	3,771	3,778	3,786	3,793	3,801
2	대구	2,998	3,004	3,010	3,016	3,022
3	광주	1,628	1,631	1,634	1,638	1,641
4	울산	1,407	1,410	1,413	1,416	1,419
5	세종	589	590	591	592	593
6	경기	11,564	11,587	11,610	11,634	11,657
7	강원	4,490	4,499	4,508	4,517	4,526
8	충남	4,292	4,300	4,309	4,317	4,326
9	창원	1,135	1,137	1,139	1,142	1,144
합계		31,872	31,936	32,000	32,064	32,128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1인당 지원비용) 현재 급식비 지원이 없는 지방소방본부 기준 2026년 24만원, 2030년 26만원으로 추정
 - 2023년 기준 지방소방본부별 평균액과의 차액을 산출한 후 추계기간 동안 소비자물가상승률(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 적용

[표 4] 소방본부별 1인당 지원비용 추정: 2026~2030년

(단위: 만원)

연번	지방소방본부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1	부산	22	23	23	23	24	24	25	25
2	대구	7	7	7	7	8	8	8	8
3	광주	23	24	24	25	25	26	26	27
4	울산	23	24	24	25	25	26	26	27
5	세종	23	24	24	25	25	26	26	27
6	경기	23	24	24	25	25	26	26	27
7	강원	23	24	24	25	25	26	26	27
8	충남	4	4	4	4	4	4	5	5
9	창원	23	24	24	25	25	26	26	27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 전체 소방공무원 수는 2023년 기준 66,059명이고 전년대비 0.2% 상승

- 추계결과, 시·도지사가 소방공무원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조치를 강구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64억 5,300만원, 2030년 70억 7,200만원 등 향후 5년간 총 336억 6,300만원으로 추계됨

[표 5]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소방공무원 수 (a, 명)	부산	3,771	3,778	3,786	3,793	3,801	—
	대구	2,998	3,004	3,010	3,016	3,022	—
	광주	1,628	1,631	1,634	1,638	1,641	—
	울산	1,407	1,410	1,413	1,416	1,419	—
	세종	589	590	591	592	593	—
	경기	11,564	11,587	11,610	11,634	11,657	—
	강원	4,490	4,499	4,508	4,517	4,526	—
	충남	4,292	4,300	4,309	4,317	4,326	—
	창원	1,135	1,137	1,139	1,142	1,144	—
1인당 지원비용 (b, 만원)	부산	23	24	24	25	25	—
	대구	7	8	8	8	8	—
	광주	25	25	26	26	27	—
	울산	25	25	26	26	27	—
	세종	25	25	26	26	27	—
	경기	25	25	26	26	27	—
	강원	25	25	26	26	27	—
	충남	4	4	4	5	5	—
	창원	25	25	26	26	27	—
추가재정소요 (a×b, 백만원)	부산	867	907	909	948	950	—
	대구	210	240	241	241	242	—
	광주	407	408	425	426	443	—
	울산	352	353	367	368	383	—
	세종	147	148	154	154	160	—
	경기	2,891	2,897	3,019	3,025	3,147	—
	강원	1,123	1,125	1,172	1,174	1,222	—
	충남	172	172	172	216	216	—
	창원	284	284	296	297	309	—
	합계	6,453	6,534	6,755	6,849	7,072	33,663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본 추계는 개정안에서 규정한 재정적 조치를 급식비 지원이 평균액 이하인 9개 지방소방본부에 급식비를 확보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한 결과로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이미연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이미연	02-6788-4661	mylee@nabo.go.kr